

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

귀 하

「농지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였음을
「농지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1. 농지의 표시

소 재 지			지 번	지 목	면 적(㎡)	소유권자 (임차권자)
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

2. 대리경작자

성명(명칭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주 소			

3. 경작기간 및 사용료

경작기간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(년 월 간)
사 용 료	원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